



제 41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등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21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정 기준 전기통신사업자의 망 계약 체결 의무화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0.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정 기준 전기통신사업자의 망 계약 체결 의무화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의 이용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대가, 그

현행	개정안
	<u>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u> <u>2.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u> <u>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만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할 것</u> <u>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관련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 검토의견

○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소수의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제공자: 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됨.

-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국내 일평균 생성 트래픽 양의 약 46.6%를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였음.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일 평균 트래픽 현황(2020~2023)>

(단위: %)

사업자명	2020	2021	2022	2023
구글(유튜브 등)	25.9	27.1	28.6	30.6
넷플릭스 코리아	4.8	7.2	5.5	6.9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3.2	3.5	4.3	5.1
네이버	1.8	2.1	1.7	2.9
카카오	1.4	1.2	1.1	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그 품질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KT, SKB, LGU+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들은 늘어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망 용량을 지속적으로 증설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음..

- 특히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와 같은 국내 CP는 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글로벌 CP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임.
 - 그럼에도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이용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대가 등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ISP와의 협의에 의한 망이용 대가를 거부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안 제34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이 개정안의 규율대상인 기간

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¹⁾,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²⁾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인데,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를 경우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10~12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트래픽양이 국내 총트래픽양 대비 1% 이상인 사업자는 2024년 기준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총 6개사업.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망 이용계약 체결의 부당한 거부와 정당한 대가의 지급 거부 금지 등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규율

- 1)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하는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³⁾되어 있는바, 어떠한 방식의
규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이해민·김우영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제9호부터-----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u>
2.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u>2의2.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u>
<u><신설></u>	<u>2의3.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요금, 계약 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u>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에 포함할 사항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미국, EU 등 주요국의 망 이용대가 정책 논의 동향과 망 이용대가 규제가 국내·외 통신시장 및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안 제34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실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등)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후규제인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며,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주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 이용대가는 CP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내 소비자 및 인터넷 생태계 및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 위반소지가 있으

며, 침익적 규제로서 명확성이 요구됨에도, 구체적인 기준없이 ‘부당’, ‘차별’, ‘정당’과 같은 불확정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4)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고 자료 제출 요청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아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안 제34조의3제3항제1호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서 ‘정당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지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의 규율대상이 주로 미국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한-미 FTA⁵⁾ 또는 통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 관련 부처의 의견, 이해관계자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225

5) **한미 FTA 제 11.3 조**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12.2 조**는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